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2187호
2025년 12월 15일
월요일

선 람	기관의 장

훈 령

○ 훈 령 제 4 3 2 호 남동구 민원접견실 운영 규정 민 원 여 권 과 2

공 고

- 공 고 제 2 2 8 7 호 보상계획 열람 공괴소래지구 소1-소래3호선 도로개설공사 도 로 과 10
 - 공 고 제 2 3 1 2 호 「화물(여객)자동차운수사업법」 위반(25.10월 차고지 외 밤샘주차) 자 동 차 관 리 과 13
-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훈 령

남동구 민원접견실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
발령한다.

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

2025년 12월 15일

남동구 훈령 제432호

남동구 민원접견실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,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원접견실 운영에 대한 기본 사항과 상담 민원 및 정보공개 열람,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민원접견실”이란 질의·진정·건의 등의 방문 민원 처리와 정보공개청구사항의 열람 처리를 위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말한다.
2. “방문민원 상담”이란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이 요청하는 사항에

대하여 해당 부서 담당자 등이 상담 및 행정처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.

3. “정보공개열람”이란 민원인이 제기한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해당 부서 담당자 등이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조례와의 관계) 「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운영 주체) 민원접견실은 민원여권과 소속하에 설치 및 운영하며, 민원여권과장은 민원접견실 운영을 총괄한다.

제5조(위치) 민원접견실은 청사 1층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하며, 필요시 위치를 이전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.

제6조(시설) 민원접견실은 방문민원을 상담하는 상담실과 정보공개열람을 진행하는 상담실로 구분되며,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상담 및 정보공개열람을 위한 각종 시설 및 물품을 구비할 수 있다.

제7조(기능) 민원접견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민원 업무 상담

2. 정보공개 열람 운영

3. 그밖에 민원 외 직원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

제8조(운영) ① 민원접견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직원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에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. 단, 긴급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민원여권과장에게 보고 후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1회 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하며, 필요시 1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단, 외부 전문가의 상담 및 교육 등 필요시 1일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③ 민원접견실을 이용하는 부서의 직원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민원접견실 관리대장에 이용 일시 및 목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④ 민원접견실을 이용하는 부서의 직원은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민원여권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민원접견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. 단, 점심시간(낮 12시~오후 1시)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직원보호) ① 민원접견실에는 독립된 CCTV를 설치하며, 민원여권과에서는 이를 관리 및 운용한다.

② 민원접견실을 이용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담당자 외 직근상급

자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함께 상담을 진행하며, 이중 1인은 반드시 녹음 및 녹화 기능이 있는 휴대용 영상 보호장비(웨어러블캠 등)를 착용 및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민원여권과 및 민원접견실을 이용하는 부서에서는 필요시 총무과에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민원인이 휴대용 영상 보호장치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에 응하지 않을 시 상담 또는 정보공개열람을 즉시 종료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민원상담 공무원의 정신적·신체적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및 「남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의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업무협조) 민원접견실의 효율적인 이용과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모든 부서의 직원들은 운영규정 및 매뉴얼을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보조 위촉·운영) ① 민원상담 및 민원접견실 운영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접견실의 민원보조인으로 위촉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민원보조인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에서

수당을 지급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훈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다목적 민원접견실[상담] 이용 대장

연번	일자	이용시간	방문목적(개인정보 제외)	상담부서 및 담당공무원 확인		
				부서명	성명	서명
1	20 . . .					
2	20 . . .					
3	20 . . .					
4	20 . . .					
5	20 . . .					
6	20 . . .					
7	20 . . .					
8	20 . . .					
9	20 . . .					
10	20 . . .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다목적 민원접견실(정보공개 열람·시청) 이용 대장

연번	일자	이용시간	청구인 성명 (부분비식별 표시 예 : 김○○)	이용자료명	상담부서 및 담당공무원 확인		
					부 서 명	성 명	서 명
1	20 . . .						
2	20 . . .						
3	20 . . .						
4	20 . . .						
5	20 . . .						
6	20 . . .						
7	20 . . .						
8	20 . . .						
9	20 . . .						
10	20 . . .						

제(개)정 이유 및 주요내용

☐ 제안이유

- 남동구 민원접견실 이용에 대한 기본 수칙을 규정하고, 특이 민원으로부터 직원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☐ 주요내용

- 제정 목적 : (안 제1조)
- 민원접견실의 기능 : (안 제7조)
- 민원접견실 이용 수칙 및 준수사항 : (안 제8조)
- 특이민원 발생시 민원상담 공무원 보호조치 등 : (안 제9조)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5-2287호

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

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【도로: 소래지구 소1-소래3호선 도로 개설공사】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.

2025. 12. 15.

남 동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자 : 남동구청장
2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-339번지 일원
3. 사업의 종류와 명칭
 -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래지구 소1-소래3호선)
 - 명칭 : 소래지구 소1-소래3호선 도로개설사업
4. 사업의 규모
 - B=10.0m, L=14.0m, A=156.0m²
5. 보상시기 : 2026. 2월(예정) ~
6. 보상금 지급처 : 남동구청 도로과
7. 보상대상
 - 토지 보상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-339번지 일대 3필지
 - 지장물 보상 : 도로개설 구간에 위치한 지장물에 한함
8. 보상방법 :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 체결 후 현금 보상
9. 보상절차 :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
10. 열람기간 : 2025. 12. 15. ~ 2025. 12. 29.

11. 기타사항

-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,
- ※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간 : 2025. 12. 30. ~ 2026. 01. 29.
- ②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도로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도로과에 문의(☎032-453-2714)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■ 토지목록

조서 번호	소 재 지		지목	공부상 면적 (㎡)	편입면적(㎡)			소 유 자			관 계 인			비 고
	주소	지번			도로	법면	계	성 명	주 소	지분	성 명	주 소	권리관계	
1	논현동	111-519	도	1	1		1	인천광역시		1				
2	논현동	111-521	도	151	151		151	인천광역시		1				
3	논현동	111-520	대	4	4		4	김*진	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***, ***동 ***호	1				

■ 지장물목록

조서 번호	소 재 지	지 번	지 장 물 현 황							관 계 인			비 고
			물건의 종 류	구조 및 규격	단위	면적 및 수량	소 유 자						
							성 명	주 소	지분	성명	주소	권리관계	
1	논현동	111-253	가건물	조립식	m ²	4.8	김*진	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***, ***동 ***호	1				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5-2312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,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46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5. 12. 15. ~ 2025. 12. 29.(14일간)
2.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: 「화물(여객)자동차운수사업법」 위반(차고지 외 밤샘주차)
3.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

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				
성 명	차량번호	주 소	처분의 원인된 사실	예정된 처분내용 (과징금: 원)
김*석	인천99아**70	인천 남동구 구월말로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김*현	인천84바**54	인천 남동구 남촌동로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이*림	인천99아**31	인천 남동구 미래로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성*식	인천99아**27	인천 남동구 예술로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장*철	인천81바**66	인천 남동구 논현로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김*현	인천84바**54	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안*일	인천84바**63	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김*현	인천84바**54	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박*민	인천99아**65	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박*영	인천99아**49	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안*동	인천84바**45	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안*동	인천84바**45	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문*욱	인천81바**18	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김*호	인천85사**46	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주*용	인천81바**18	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박*준	인천86바**91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김*오	인천83바**30	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리미로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우*원	인천84바**55	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
4.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(T. 032-453-2916)로 직접방문, 우편 및 팩스(F. 032-453-2919)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,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.

2025. 12. 12.

남 동 구 청 장
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
		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남동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